[사 건 명] 행심 2017 - 44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09. 08.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전학』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08. 10. 체육시간에 ○○○가 전달한 말만 듣고 수업 도중 □□□, △△△에게 폭언과 심한 욕설을 하고 하교 후 카톡으로 정확한 상황을 해명하고 사과하는 □□□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같은 달 28. 2교시 수업 후 쉬는 시간에 청구인이 ◉◉◉에게 본인을 욕하고 다닌다며 필통으로 입을 툭툭 치고 후에 필통을 책상을 내리치고 던지는 행위가 있었고 이후 오늘 발생한 일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을 가하였다.

나. 이 사건을 계기로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2017. 08. 30.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한 후, 2017. 9. 5. 학교

폭력자치위원 회에 회부되어, 같은 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게 전학,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및 보호자 부가적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 10. 20.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2017. 8. 28. 사건 다음날부터 청구인은 학교의 관리 감독을 받아 교실수업에 참가하지 못하고 피청구인의 사실상 제재와 분리에 따라 사과하기 어려웠고 청구인이 사과를 하고 싶다하여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 처분만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과거 학교폭력 사례로 징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등학교 2학년 인문계열 여학생 학급은 3반으로 다른 학급 교체만으로도 충분히 피해학생과 분리가 가능함에도 전학이라는 과도하게 무거운 조치를 내렸다.

다. 청구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과거에 학교폭력행위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재발가능성이 낮은 점에 비해 과도하게 가중한 조치를 받은 것은 행정 행위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라도 청구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피해학생과 원만히 학교생활을 회복하던 중에 전학처분을 받게 된 것은 너무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 주장하지만 피해학생들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은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여 피해학생들은 두려움으로 학교생활이 고통스럽다고 진술하였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반성의 의사가 없고 피해학생의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낮고 유사한 학교폭력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여 전학조치 결정하였다.

다. 학교폭력 신고접수 이후 사안조사(2017.8.29.)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17.9.5.) 개최일까지 학교에서는 적법하게 모든 사안을 조사하여 처리하였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2. 판 단

가. 인정되는 기초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제출된 증거 포함), 청구인 및 피청구인측에 대한 구술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7. 8. 10. 체육시간 중에 ○○○ 학생으로부터 같은 반인

피해학생인 □□□와 △△△의 대화 내용을 전달받은 후 체육선생님이 있고 주의를 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와 △△△에게 폭언과 심한 욕설을 하였고, 하교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 학생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화 내용에 대해 SNS 문자(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해명을 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가하였고, 같은 달 28. 2교시 수업 후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인 같은 반 ◉◉◉에게 다가와서 청구인의 필통으로 입을 툭툭 치며 '너 이 입으로 나 까고 다녔다며' 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위 ◉◉◉의 필통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칠판으로 던졌으며, '오늘 발생한 일이 외부로 새어나가면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 고 하면서 같은 교실에 있는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다.

(2) 이 사건 이후에 피해학생 □□□, △△△, ◉◉◉는 담임선생님에게 위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측의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협의한 결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고 함)를 개최하기로 하여 학폭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학폭위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전학조치 처분을 받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감히 예상하기 어려운 행위라는 점, 피해학생은 이 사건 이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얻어 3개월이 넘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며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로 그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학생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같은 반 학생들도 청구인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탄원서로서 호소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문과생으로서

3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문과반에서는 이동식 수업이 빈번하여 설령 청구인을 다른 문과반 학급으로 교체하더라도 피해자들과의 빈번한 대면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은 극심한 두려움과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현재시점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측의 부모는 피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의 부모에 대해 개인적인 사과나 합의가 없었던 점[이와 관련하여 2017. 8. 15. 피해학생이 작성한 생일엽서를 청구인과 피해학생사이에 화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학급에서는 생일을 맞은 학생에 대해 같은 반 급우들이 전체적으로 생일엽서를 작성하여 생일을 맞는 학생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의례적으로 해 온 것인데(본 건 심의에 출석한 청구인의 대리인 역시 위 청구인이 제출한 피해학생의 생일엽서는 의례적인 생일행사로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 2017. 8. 15. 생일을 맞은 청구인에 대해 피해학생이 생일엽서를 적어서 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생일엽서를 주지 않았다고 위협을 받을 것 같아 두려워 마지못해 생일엽서를 적어서 준 것일 뿐 결코 진정한 마음으로 청구인과 화해하는 취지에서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고 피해학생은 반박하고 있고, 피해학생과의 화해를 했는지에 관하여 위 생일엽서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최된 학폭위에서 심의한 결과 청구인에 대해 전학조치보다 무거운 퇴학처분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교육의 기회는 계속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퇴학조치보다 가벼운 처분인 전학조치 의결을 한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